

지역개발 정도에 따른 매칭펀드비율 차등적용방안

임 종 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연구위원, 경제학박사

I. 序

- 정부는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각종 정책자금 지원시 일괄지원방식에서 중앙정부의 지원금과 지방정부가 마련한 자금을 연계하여 지원해 주는 매칭펀드방식을 적용하기 시작했음.
- 이같은 변화는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지자체의 무분별한 사업수행에 따른 재정낭비의 방지와 참여도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그러나 매칭펀드의 비율을 모든 지자체에 대해 일률적으로 5:5로 운용할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고, 경제성장이 더디며, 인구유출이 심한 낙후

지역은 개발재원의 마련에 어려움을 겪게 할 우려가 있음.

- 또한 지난 30여년간의 경제개발과정에서 지역발전 편차가 심화되어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선발지역과 후발지역간에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큼.
- 예를 들면 수도권과 지방,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간에는 산업구조도 다르고, 공업화의 수준에도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최근 경기의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음.
- 따라서 지역의 발전정도에 따라 중앙과 지방의 매칭펀드비율을 차등화하여 운용함으로써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는 WTO 체제 하의 지역개발보조

금 제도에서 허용하고 있는 낙후지역에 대한 보조금 제도의 운용방향과도 일치하는 것임.

- 이에 본 고에서는 전국의 시도 및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발전의 정도를 고찰해 보고, 이를 토대로 매칭펀드 운용비율을 제시해 보고,
- 아울러 선진국의 지역차등화 지원 정책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함.

II. 地域發展 정도의 評價

1. 평가기준

- 차등화를 위한 기준으로서 지역발전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 대표적인 지표로는 재정자립도, 소득(GRP 또는 1인당 GRP), 인구 및 인구증가율, 실업률, 공업집적도 등을 들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통계자료의 접근가능성을 고려하여
- 시도단위의 광역 지자체에 대해서는 공업집적도, 재정자립도, 인구증가율, GRP 증가율 및 GRP 수준을
- 시군구 단위의 기초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자립도, 인구증가율, 공업집적도를 기준으로 평가했음.

- 각 지역의 발전정도는 매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3년 또는 5년 단위로 재평가하여 보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수도권의 경우 지역에 따라 다소의 논란에 여지는 있겠으나, 지방에 비해서는 재정사정이 양호하므로 매칭펀드 비율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였음.
- 다만 경기 동북부지역과 인천광역시 도서지역은 별도의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임.
- 서울, 인천, 인천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대하여 앞의 기준에 따라 평가항 결과를 토대로 선발지역, 중간지역, 후발지역 및 낙후지역 등으로 구분해 보았음.
- 선발지역 :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서 재정자립도(1998년 결산기준)가 45% 이상이고, 공업집적도(1998년 말 기준)가 1.2 이상이며, 인구증가율(1995~1998년 중 평균)이 0.5% 이상인 지역
- 중간지역 :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서 재정자립도(1998년 결산기준)가 40%이상 45% 미만이고, 공업집적도(1998년말 기준)가 0.4 이상 1.2 미만이며, 인구증가율(1995~1998년 중 평균)이 0.5% 이하에서

- 1.0% 미만인 지역
- 후발지역 :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서 재정자립도(1998년 결산기준)가
45% 이하이거나, 공업집적도(1998
년말 기준)가 0.4 미만이거나, 인구
감소율(1995~1998년 중 평균)이
1.0% 이상인 지역
- 낙후지역 :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서 재정자립도(1998년 결산기준)가

45% 이하이고, 공업집적도(1998년
말 기준)가 0.4 미만이며, 인구감소
율(1995~1998년 중 평균)이 1.0%
이상인 지역

2. 평가결과

- 위의 기준에 의거, 시도 및 시군구별
평가결과는 다음의 <표 1>과 같음.

<표 1> 지역구분 결과

구 분	기 준	시도별	시 · 군 · 구	
선발지역	· 재정자립도 50%이상이고 · 공업집적도 1.2이상이며, · 인구증가율 0.5% 이상인 지역	대 구 광 주 울 산	부 산	기장군
			대 구	달서구, 달성군
			울 산	남구, 울주군
			충 북	청주시
			충 남	아산시, 연기군
			전 북	군산시
			전 남	여주시, 광양시
			경 남	거제시
중간지역	· 재정자립도 45% 이상 50% 미만이고, · 공업집적도 0.4 이상 1.2 미만이며, · 인구증가율 0.5% 미만에서 인구감소율 1.0% 미만인 지역	-	부 산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대 구	중구, 서구, 북구
			광 주	서구, 북구, 광산구
			대 전	유성구, 대덕구
			울 산	동구, 북구
			강 원	원주시, 동해시
			충 북	충주시, 청원군, 옥천군,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충 남	천안시, 서산시, 논산시, 서천군, 당진군

		-	전 북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전 남	목포시, 영암군
			경 북	경주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울진군
			경 남	마산시, 사천시, 함안군, 창녕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후발지역	• 재정자립도 45%미만이거나 • 공업집적도 0.4 미만이거나 • 인구감소율 1.0% 이상인 지역	부 산	부 산	북구,
			대 구	동구, 남구, 수성구
		경 남	광 주	남구, 동구
			대 전	중구, 서구, 동구
		대 전	울 산	중구,
			강 원	춘천시, 강릉시, 속초시, 삼척시, 횡성군, 영월군, 홍천군, 철원군, 인제군, 평창군, 고성군, 양양군, 화천군, 양구군
		충 남	충 북	제천시
			충 남	보령시, 금산군, 태안군
		전 남	전 북	남원시, 정읍시, 부안군, 무주군
			전 남	순천시, 나주시, 담양군, 곡성군, 강진군, 장성군, 무안군, 함평군, 완도군, 보성군, 고흥군, 영광군, 진도군
		전 북	경 북	김천시, 영천시, 안동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성주군, 봉화군, 군위군, 의성군, 예천군, 울릉군
			경 남	진주시, 통영시, 밀양시, 의령군, 고성군, 함천군, 남해군, 하동군
		제 주	제 주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강 원	태백시, 정선군
낙후지역	• 재정자립도가 45% 미만이고, • 공업집적도 0.4 미만이며, • 인구감소율이 1.0% 이상인 지역	-	충 북	영동군, 보은군, 괴산군
			충 남	공주시, 부여군, 홍성군, 예산군, 청양군
			전 북	순창군, 진안군, 임실군, 고창군, 장수군
			전 남	해남군, 구례군, 신안군, 화순군, 장흥군
			경 북	영덕군, 청송군, 영양군, 울진군, 청도군
			경 남	함양군, 창녕군, 거창군, 산청군

주) <부표 2>를 토대로 작성한 것임.

- 전국 16개 시도별 평가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음.
 - 선발지역 : 대구, 광주, 울산
 - 중간지역 : 해당 지역 없음
 - 후발지역 : 부산, 대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낙후지역 : 해당 지역 없음
- 다만 선발지역으로 평가된 대구, 광주 등은 지역생산의 절대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구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1인당 GRP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임.
- 전국 232개 시군구별 평가결과를 보면 수도권 66개 시군구(28.4%)를 제외하면
 - 선발지역은 총 12개 시군구(5.2%), 중간지역은 57개 시군구(24.6%), 후발지역은 68개 시군구(29.3%), 낙후지역은 29개 시군구(12.5%) 등으로 나타났다.
- 선발지역 : 부산(기장군), 대구(달서구, 달성군), 울산(남구, 울주군), 충북(청주시), 충남(아산시, 연기군), 전북(군산시), 전남(여수시, 광양시), 경남(거제시) 등 총 12개 시군구
- 중간지역 : 부산(중구 등 14개 구), 대구(중구, 서구, 북구), 광주(서구, 북구, 광산구), 대전(유성구, 대덕구),

- 울산(동구, 북구), 강원(원주시, 동해시), 충북(충주시 등 6개 시군), 충남(천안시 등 5개 시군), 전북(전주시 등 4개 시군), 전남(목포시, 영암군), 경북(경주시 등 7개 시군), 경남(마산시 등 7개 시군) 등 총 123개 시군
- 후발지역 : 부산(북구), 대구(동구, 수성구, 남구), 광주(남구, 동구), 대전(중구, 서구, 동구), 강원(춘천시 등 14개 시군), 충북(제천시), 충남(보령시, 금산군, 태안군), 전북(남원시 등 4개 시군), 전남(순천시 등 13개 시군), 경북(김천시 등 12개 시군), 경남(진주시 등 8개 시군), 제주(제주시 등 4개 시·군) 등 총 68개 시군
- 낙후지역 : 강원(태백시, 정선군), 충북(영동군, 보은군, 괴산군), 충남(공주시, 부여군, 홍성군, 예산군, 청양군), 전북(순창군, 진안군, 임실군, 고창군, 장수군), 전남(해남군, 구례군, 신안군, 화순군, 장흥군), 경북(영덕군, 청송군, 영양군, 울진군, 청도군), 경남(함양군, 창녕군, 거창군, 산청군) 등 총 29개 시군

III. 매칭펀드 運用比率의 差等化 方案

- 지역의 재원조달능력, 지역발전정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의지 등을 고려하여

- 전국을 앞의 평가결과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의 선발지역, 중간지역, 후발지역 및 낙후지역 등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매칭펀드 운용비용을 차등 적용하도록 함.
- 적용기준을 예시해 보면 다음과 같음.
 - 수도권 : 지방자치단체 7, 중앙정부 3의 비율
 - 선발지역 : 지방자치단체 6, 중앙정부 4의 비율
 - 중간지역 : 지방자치단체 5, 중앙정부 5의 비율
 - 후발지역 : 지방자치단체 4, 중앙정부 6의 비율
 - 낙후지역 : 지방자치단체 3, 중앙정부 7의 비율

IV. 外國의 事例

- 외국의 지역개발 보조금 지원사례는 <표 2>와 같음.
 - 외국의 경우 모두 매칭펀드 비율을 적용하여 차등 지원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지역개발 정도에 따라 낙후지역이나 특정목적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함으로써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 영국은 지역선별지원금을 근거로 실업률, 국가정책상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개발지역과 중간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음.
 - 지원규모는 낙후도와 지역고용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총투자비의 5~15%에 해당하는 금융지원을 해주고 있음.
- 독일은 EEC 조약에 의거, 매 5년마다 경제구조 개선지역을 확정하는데, 농촌지역, 구조혼합지역, 인구밀집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전체의 약 40%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원해 주고 있음.
 - 구분근거는 1인당 GRP, 연간소득, 실업률 등이며, 지원수단은 재정투자보조, 재정보증 등이 있는데, 총투자액의 10%까지를 지원해 주고 있음.
- 프랑스는 국토개발장려금 제도에서 남부 중앙지역, 서부지역, 북부변경지역, 산업침체지역 및 공업육성장려 지역을 주 대상으로 하여 전체의 50%가 이에 해당됨.
 - 지원규모는 지역에 따라 총투자액의 17~25%로 차등 지원되는데, 1인당 고용에 대하여 35,000~50,000프랑을 지급하고 있음.

- EU는 유럽지역개발기금 제도로 소득, 실업률, 산업성장률 등을 기준으로 7개 지역으로 나누어 이 중 저개발지역, 산업쇠퇴지역, 농촌지역의 개발에 대해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음.
- 일본은 공업재배치법(1972년)에 의거 공업집적도와 인구증가율을 기준으로 이전촉진지역, 유도지역, 특별유도지역 및 백지지역으로 구분하고,
 - 이전촉진지역에서 유도지역 및 특별유도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고정자산세, 토지보유세 등의 감면조치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 또한 산업재배치를 촉진시키기 위해 촉진환경정비보조금을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電源地域에 대한 산업재배치를 촉진시키기 위한 보조금 지급과 융자, 그리고 특정지역의 고용촉진을 위한 보조금 제도 등을 도입하고 있음.
- WTO에서는 소득, 실업률 등에서 낙후된 지역경제 침체지역에 대하여 지역개발보조금 지급을 허용하고 있는데, 향후 지역개발시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표 2> 낙후정도에 따른 지역지원제도사례

국가	근거법 및 제도	지역의 구분	구분근거	지 원 내 용
영 국	Regional Selective Assistance (지역선별지원금)	· Development Area · Intermediate Area	· 실업률 · 국가정책상 개발우선순위	· 지원규모는 지역의 낙후정도 및 지역고용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총 투자비용의 5~15% 금융지원
독 일	EEC조약 제93장 매 5년마다 “지역경제구조 개선” 지역확정	· 농촌지역형 · 구조혼합지역형 · 인구밀집지역 - 총 173개 단위지역 중 65개의 지원지역 선정	· 1인당 GRP · 연간 소득 총계 · 평균실업률	· 지원수단은 금융, 재정투자보조, 재정보증 등이 있음 · 투자보조법에 의거 일반지역은 8.75%, 변방지역은 10%까지 보조됨
프 랑 스	PAT (국토개발장려금)	· 남부중앙, 서부지역, 북부변경지역 · 산업침체지역(북동부 철강공업지역), 공업육성장려지역(서남부지역)	국토의 약 50%가 대상지역임	· 지원규모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 총 투자액의 17~25% 범위 내에서 고용당 35,000~50,000프랑 지급

E U	유럽구조기금 유럽지역개발 기금 (ERDF)	· 지역을 7개로 구분 이 중 EU obj. 1, 2, 5b지역이 낙후지역 지원의 성격을 지님 · obj. 1: 저개발지역 · obj. 2: 산업쇠퇴 지역 · obj. 5b: 농촌지 역개발	· obj.1 : 1인당 GDP가 유럽전 체의 75%이하 인 지역 · obj. 2: 3년간 실업률이 유럽 전 체 평 균 보 다 높고, 산업쇠퇴 가 뚜렷한 지역	· 유럽구조기금을 사용할 때 각 국 가 및 지방정부에 적극적으로 지 원에 개입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지원규모가 상당히 큼 · ERDF는 지역의 기반시설 정비 나 개량 및 내생적 개발과 투자를 위한 조건 창출에 사용됨 · 영국 Merseyside지역에 대한 지 원사례를 보면 산업단지 확장과 개발에 관련된 비용이 총지원금 (약 1,050억원) 중 상당 비중을 차지함
일 본	공업재배치법 (1972)	· 이전촉진지역 · 유도지역 · 특별유도지역 · 백지지역	· 공업집적도 · 인구증가율	· 이전촉진지역에서 유도, 특별유도 지역으로 이전시 조세감면(고정 자산세), 토지보유세비과세 등 우 대조치 및 보조금 지급 · 산업재배치 촉진환경정비 보조금 - 유도지역으로 이전시 m²당 5,000 ¥ 지급 - 특별유도지역에 이전시m²당 7,500 ~10,000 ¥ 지급 · 전원지역산업재배치 촉진보조금 - 이전시 m²당 10,000~12,500 ¥ 지급 - 신증설시 m²당 7,500~12,500 ¥ 지급 · 기타 용자, 지역고용개발 조성금 지급
W T O	지역개발보조 금 제도	· 지역경제 침체지역	지역의 소득, 1인당 GRDP 가 전국평균의 85% 이하 지역의 실업률 이 전국평균의 110% 이상	· 이전지역이 낙후지역의 조건을 갖출 경우 공장(본사)지방이전시 조세감면 지원 ·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가능 · 농공단지, 개발촉진지구 등이 대 부분 낙후지역에 속하므로 이들 지역에 대한 지원가능

<부 록>

부록 2> 시군구별 공업집적도, 재정자립도

부록 1> 우리나라 시도별 공업집적도, 재정자립도

GRP증가율, GRP수준

<부표 1> 시도 공업집적도, 재정자립도

부표 2> 시군구별 공업집적도, 재정자립도

증가율, GDP 증가율

공업집적도

재정자립도

공업집적도			재정자립도			인구증가율	
순위	지역명	집적도	순위	지역명	%	순위	지역명
1	울산	8.25	1	서울	84.8	1	경기
2	인천	3.07	2	경기	75.0	2	충남
3	서울	1.73	3	부산	72.1	3	경남
4	경기	1.66	4	대전	68.9	4	대전
5	부산	1.65	5	울산	68.8	5	인천
6	대구	1.41	6	인천	68.0	6	울산
7	광주	1.30	7	대구	66.3	7	광주
8	경남	1.16	8	광주	58.0	8	충북
9	대전	1.14	9	경남	38.8	9	제주
10	경북	1.06	10	충북	36.9	10	강원
11	충남	0.98	11	제주	36.0	11	경북
12	전남	0.86	12	경북	30.5	12	서울
13	충북	0.82	13	충남	29.3	13	대구
14	전북	0.48	14	강원	29.0	14	전북
15	강원	0.18	15	전북	26.7	15	전남
15	제주	0.07	15	전남	21.6	15	부산

주 1) 재정자립도(1998년 결산기준)= 자주재원(자립수입+세외수입) / 총수입

2) 공업집적도(1998년)= $\sqrt{\frac{\text{지역공업생산비}}{\text{지역인구비중}}}$

3) 인구(주민등록인구)증가율은 1995~1998년 증가율

4) GRP증가율은 1995~1998년 중 전년대비 증가율

5) 1인당 GRP수준은 전국평균을 100으로 한 상대수준

공업집적도			재정자립도		
순위	지역명	집적도	순위	지역명	집적도
1	울산남	23.39	1	과천시	100.00
2	인천동	21.74	2	강남구	99.99
3	인천서	18.09	3	서초구	99.99
4	울산중	15.20	4	주원시	99.99
5	금천구	13.49	5	서울중	99.99
6	여의구	13.24	6	전국	99.99
7	마산신	12.70	7	성남시	99.99
8	1구마리	12.43	8	안산시	99.99
9	2서동	12.43	9	이천시	99.99
10	3울산북	12.43	10	고양시	99.99
11	4포항남	11.69	11	113송파구	99.99
12	5천안북	7.87	12	112군포시	99.99
13	6부천서	7.47	13	106부천시	99.99
14	7안성서	7.67	14	1038영등포	99.99
15	8울제주	3.78	15	1008안산시	99.99
16	9대전북	1.09	16	92시흥시	99.99
17	10인천서	0.92	17	91전주시	99.99
18	11남원북	0.79	18	87강원시	99.99
19	12사하구	0.71	19	84경주시	99.99
20	13성평북	2.26	20	808영천시	99.99
21	14수원서	5.85	21	799의정부	99.99
22	15대원서	6.24	22	799김포시	99.99
23	16시흥서	6.94	23	699화성군	99.99
24	17부천시	4.56	24	하남시	99.99
25	18울산서	4.40	25	인천서	99.99
26	19전남북	4.34	26	종로구	99.99
27	20인천서	4.31	27	구리시	99.99
28	21의정부	4.08	28	광명시	99.99
29	22인천중	3.99	29	제주시	99.99
30	231992년	3.78	30	울산남	99.99
31	24인천남	3.78	31	울산남	99.99

-152 -

공 업 집 적 도			재 정 자		공 업 집 적 도			재 정 자		합	
순위	지역명	집적도	순위	지역명	순위	지역명	집적도	순위	지역명		
32	화성군	3.67	32	의왕시	67	강릉시	1.61	67	진해시		
33	안양시	3.66	33	광주군	68	창원시	1.42	68	유성구		
34	달서구	3.65	34	김해시	69	강릉시	1.39	69	여수시		
35	영도구	3.57	35	광양시	70	광주군	1.35	70	동두천		
36	용인시	3.53	36	포항시	71	군포시	1.33	71	아산시		
37	청주시	3.35	37	인천중	72	목포시	1.27	72	남동구		
38	전주시	3.24	38	남양주	73	계양구	1.25	73	익산시		
39	양산시	3.07	39	용산구	74	서대문	1.23	74	서귀포		
40	광산구	3.04	40	천안시	75	용산구	1.20	75	울산동		
41	아산시	2.95	41	기장군	76	기장군	1.20	76	수영구		
42	종로구	2.80	42	부산진	77	안산시	1.16	77	경산시		
43	광양시	2.79	43	오산시	78	경주시	1.14	78	강동구		
44	의왕시	2.78	44	구미시	79	영월군	1.13	79	사하구		
45	서산시	2.78	45	부산중	80	부산중	1.12	80	노원구		
46	대구중	2.62	46	거제시	81	서대문	1.02	81	대전서		
47	영등포	2.62	47	마포구	82	광주중	1.02	82	성동구		
48	거제시	2.56	48	달성군	83	서대문	1.00	83	포천군		
49	군산시	2.51	49	서울강서	84	진해시	0.98	84	연기군		
50	평택시	2.47	50	울주군	85	연제구	0.97	85	춘주시		
51	칠곡군	2.35	51	목포시	86	과천시	0.97	86	서대문		
52	부산남	2.22	52	진주시	87	동대문	0.96	87	속초시		
53	연기군	2.21	53	강릉시	88	광주북	0.95	88	연제구		
54	김해시	2.20	54	달서구	89	동대문	0.94	89	해운대		
55	광명시	2.16	55	과주시	90	도봉구	0.86	90	군산시		
56	양주군	2.12	56	원주시	91	송파구	0.85	91	사상구		
57	달성군	2.11	57	대구중	92	부천시	0.84	92	안성시		
58	광진구	2.06	58	연수구	93	서대문	0.78	93	여주군		
59	부산강서	2.01	59	구로구	94	이천시	0.78	94	춘천시		
60	음성군	1.95	60	계양구	95	충청북	0.77	95	동대문		
61	진천군	1.92	61	동래구	96	원주시	0.77	96	수성구		
62	마포구	1.90	62	부평구	97	부천시	0.69	97	부산남		
63	김포시	1.86	63	동작구	98	당진시	0.65	98	원평구		
64	대구북	1.74	64	광진구	99	해운대	0.63	99	부산강서		
65	경산시	1.70	65	양천구	100	원주시	0.61	100	순천시		
66	동대문	1.68	66	동해시							

공 업 집 적 도			재 정 자		공 업 집 적 도			재 정 자	
순위	지역명	집적도	순위	지역명	순위	지역명	집적도	순위	지역명
101	함안군	0.66	101	부안군	135	47.8 의령	0.02	135	0.02 밀양시
102	부산동	0.66	102	광주동	136	47.8 금천	0.00	136	0.00 무주군
103	양천구	0.65	103	관악구	137	47.7 청양	0.02	137	0.02 태안군
104	동두천	0.63	104	광주남	138	47.7 수성	0.02	138	0.02 광산구
105	강동구	0.63	105	대전중	139	47.6 나주	0.04	139	0.04 사천시
106	관악구	0.61	106	대구북	140	47.4 진주	0.06	140	0.06 장성군
107	수영구	0.61	107	광주서	141	47.4 은평	0.07	141	0.07 부산동
108	동작구	0.59	108	대덕구	142	47.3 담양	0.09	142	0.09 광주북
109	포천군	0.59	109	도봉구	143	47.3 괴산	0.12	143	0.12 보령시
110	성북구	0.56	110	울릉군	144	47.1 정읍	0.12	144	0.12 제천시
111	옥천군	0.53	111	인천남	145	47.1 성주	0.14	145	0.14 중랑구
112	단양군	0.49	112	칠곡군	146	46.8 영월	0.15	146	0.15 삼척시
113	구리시	0.47	113	음성군	147	46.6 노원	0.16	147	0.16 김천시
114	여주군	0.46	114	태백시	148	46.1 청주	0.18	148	0.18 영암군
115	사천시	0.45	115	성북구	149	46.0 임실	0.20	149	0.20 예천군
116	충주시	0.45	116	용인시	150	45.6 강릉	0.20	150	0.20 당진군
117	하남시	0.45	117	대구남	151	45.6 밀양	0.21	151	0.21 합평군
118	고령군	0.44	118	홍천군	152	45.6 통영	0.23	152	0.23 울산북
119	논산시	0.41	119	통영시	153	45.6 고성	0.25	153	0.25 대전동
120	유성구	0.41	120	완주군	154	45.4 영광	0.26	154	0.26 강북구
121	김제시	0.41	121	청원군	155	45.4 홍천	0.27	155	0.27 울진군
122	예산군	0.39	122	금천구	156	45.2 홍성	0.31	156	0.31 화천군
123	남양주	0.38	123	경주시	157	45.1 공주	0.31	157	0.31 울산중
124	창녕군	0.35	124	인제군	158	45.1 대천	0.34	158	0.34 금정구
125	곡성군	0.34	125	양주군	159	44.9 영주	0.35	159	0.35 인천동
126	김천시	0.34	126	정선군	160	44.7 삼척	0.35	160	0.35 합천군
127	장성군	0.33	127	함안군	161	44.7 대지	0.36	161	0.36 담양군
128	대구동	0.32	128	진천군	162	44.7 순창	0.43	162	0.43 연천군
129	부여군	0.31	129	철원군	163	44.6 강화	0.43	163	0.43 단양군
130	영천시	0.31	130	서산시	164	44.2 제천	0.52	164	0.52 논산시
131	강북구	0.30	131	대구서	165	44.1 보은	0.55	165	0.55 창녕군
132	횡성군	0.29	132	가평군	166	44.0 철원	0.56	166	0.56 영남고성
133	부산북	0.28	133	대구동	167	43.7 무안	0.59	167	0.59 함양군
134	고양시	0.28	134	평창군	168	43.7 제주	0.62	168	0.62 양구군

공 업 집 적 도			재 정 자		공 업 집 적 도			재 정 자	
순위	지역명	집적도	순위	지역명	순위	지역명	집적도	순위	지역명
169	연천군	0.13	169	거창군	203	안동시	0.052	203	산청군
170	부안군	0.12	170	공주시	204	양양군	0.042	204	임실군
171	보령시	0.12	171	영도구	205	산청군	0.050	205	고령군
172	완도군	0.12	172	김제시	206	가평군	0.046	206	진안군
173	광주남	0.12	173	부산북	207	울진군	0.040	207	무안군
174	대전동	0.11	174	부여군	208	태백시	0.044	208	해남군
175	해남군	0.11	175	화순군	209	울진군	0.043	209	고창군
176	순천시	0.11	176	나주시	210	함양군	0.0365	210	진도군
177	고창군	0.10	177	양평군	211	청주시	0.0339	211	예천군
178	춘천시	0.10	178	정읍시	212	정읍시	0.0339	212	고흥군
179	속초시	0.10	179	영천시	213	평창군	0.0338	213	완도군
180	봉화군	0.10	180	영주시	214	남해군	0.032	214	청송군
181	합천군	0.10	181	횡성군	215	태안군	0.0289	215	하동군
182	군위군	0.090	182	의령군	216	서귀포시	0.0283	216	강화군
183	의령군	0.089	183	안동시	217	장성군	0.0260	217	곡성군
184	강진군	0.087	184	진안군	218	과천시	0.0254	218	문경시
185	함평군	0.086	185	부산서	219	연천군	0.0240	219	봉화군
186	의성군	0.083	186	남원시	220	인제군	0.0234	220	강진군
187	영덕군	0.081	187	청양군	221	양평군	0.0229	221	영광군
188	북제주	0.075	188	성주군	222	옹진군	0.0202	222	영덕군
189	하동군	0.071	189	북제주	223	구례군	0.0191	223	청도군
190	남원시	0.071	190	영월군	224	진안군	0.0187	224	서천군
191	대구남	0.065	191	금산군	225	산청군	0.0175	225	의성군
192	화순군	0.064	192	남해군	226	울진군	0.0168	226	장흥군
193	강원고성	0.063	193	장수군	227	진안군	0.0143	227	영양군
194	고흥군	0.063	194	양양군	228	양양군	0.0136	228	보성군
195	상주시	0.062	195	홍성군	229	청주시	0.0128	229	1.80 군위군
196	거창군	0.062	196	괴산군	230	화천군	0.0115	230	1.86 보은군
197	광주동	0.062	197	강원고성	231	2.5 무안군	0.0076	231	1.89 상주시
198	남제주	0.061	198	구례군	232	2.5 영암군	0.0063	232	1.93 울진군
199	예천군	0.059	199	순창군	232	2.5 영암군	0.0063	232	1.93 울진군
200	보성군	0.058	200	영동군	232	2.5 영암군	0.0063	232	1.93 울진군
201	영광군	0.058	201	남제주	232	2.5 영암군	0.0063	232	1.93 울진군
202	문경시	0.055	202	옥천군	232	2.5 영암군	0.0063	232	1.93 울진군

3) 인구(주민등록인구)증가율은 1995~1998년 중

부록 3> 일본의 지역차등화 지원 정책

(1) 근거법

공업재배치법(1972)

(2) 목 적

공업집적이 과도한 지역에서 공업집적도가 낮은 지역으로의 공장이전, 해당 지역의 공장 신증설 환경정비, 기타 환경보전 및 고용안정 등을 도모함으로써 공업재배치를 촉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과 국민복지향상을 꾀함.

(3) 지역구분

1) 이전촉진지역 : 대도시 및 그 주변 지역 가운데 공업집적도가 두드러지게 높아 당해 지역외로 공장이전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政令에서 정한 지역

2) 유도지역

① 道縣단위의 유도지역 : 공업집적도가 낮고, 인구증가율도 낮은 道

縣으로 政令에서 정한 구역. 다만 인구, 공업집적도, 인구증가율 등으로 볼 때 일정기준 이상의 市町村 구역은 제외함.

② 市町村단위의 유도지역 : ①의 구역과 연접해 있고, 공업집적도 및 인구증가율이 ①의 구역에서의 공업집적도 및 인구증가율과 유사한 市政村으로 政令에서 정한 지역.

3) 특별유도지역 : 유도지역 중 특히 공업집적도가 낮은 홋카이도, 오키나와 등 12개 道縣 및 구조적으로 쇠퇴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섬유단지, 광산지역 및 電源(원자력 및 석탄화력발전소)소재 市町村 및 그와 인접한 市町村

4) 백지지역 : 위 지역을 제외한 지역

(4) 관련 우대조치

1) 세제지원

(가) 對 기업

① 국세 : 특정자산의 환매에 따른 과세특례(조세특별조치법)

○ 다음의 구역에 대해서는 1980년 4월 1일부터 2001년 3월 31일까지

지 그 구역내의 사업자산을 양도하여 당해단지내 구역에 진출하는 사업자에 대해 양도일을 포함한 사업년도에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 및 장치의 자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사업용으로 제공할 경우 압축기장을 인정함.

- 용도지역에 관하여 도시계획이 정한 지역에서 지역진흥정비공단, 주택도시정비공단, 지방자치단체 등이 해당지역의 용도구분에 따라 조성한 10ha이상의 단지구역
- 공장입지법 규정에 의한 공장용지조사에 의거, 공장 또는 사업장의 입지로 적정하다고 공장입지 조사부에 기재되어 있는 지역

② 지방자치단체

가) 고정자산세의 감면(공업재배치법)

- 유도지역으로 이전하여 신증설하는 기업(제조업)은 이전공장에서 취득한 토지, 건물설비에 대해 고정자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음.
- 대상사업 : 이전계획을 인정받은 기업으로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이 2,40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
- 적용기간 : 토지건물, 설비에 대

해서는 이전 인정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 이내에 취득한 것, 토지는 그 취득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그 토지를 부지로 하는 공장용건물의 건설착수를 한 경우에 한함

나) 특별토지보유세의 비과세(지방세법)

- 유도지역으로 이전하여 신증설하는 기업(제조업)은 그 공장용지에 대한 특별토지 보유세를 과세하지 않음
- 대상기업 : 이전계획을 인정받은 기업으로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이 2,400만엔을 초과할 것
- 적용기간 : 이전계획 인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토지를 취득하여 1년 이내에 그 토지를 부지로 하는 공장용 건물건설에 착수한 경우에 한함

(나) 對 지방자치단체

① 세제상 우대조치

- 지방세 감면에 따른 세수감수를 지방교부세로 보전
- 고정자산세의 감수보전(공업재배치촉진법, 지방세법, 보통교부세에 관한 규칙)
- 적용기간 : 이전계획 수립일로부터

<부표 3> 산업재배치 촉진을 위한 환경정비 보조금 제도

구 분	입 지 지 역	유 도 지 역	특 별 유 도 지 역	
		보조단가(한도액)	보조단가(한도액)	특례 공업단지 보조단가(한도액)
이 전	공업단지 등	5,000엔/m ² (1억엔)	7,500엔/m ² (1억5천만엔)	10,000엔/m ² (2억엔)
신증설	〃	-	5,000엔/m ² (1억엔)	7,500엔/m ² (1억5천만엔)
	지역정비진흥공단의 단 지	2,500엔/m ² (5천만엔)	7,500엔/m ² (1억5천만엔)	10,000엔/m ² (2억엔)

- 주 1) 보조금액은 공장 또는 사업소면적에 m²당 보조단가를 곱한 것임.
 2) 특례공업단지란 특별유도지역내의 공업단지로 원칙적으로 1978년말까지 이미 조성완료 또는 조성 중인 것임(산업재배치 촉진환경설비 보조금 규칙)

터 5년간 또는 이전취소일

- 감수보전 한도액

· 과세면제시 : (과세표준액 × 80/100) : 道縣(市町村)은 75/100)

· 불균일과세시 : (과세표준액 × [0.014-(불균등과세세율)] × 80/100 : 道縣(市町村)은 75/100)

○ 지방채 발행상의 우대조치

- 기채에 대한 특별배려(공업재배치 촉진법)

- 지방자치단체가 공장 신증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유도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장용지

조성 및 기타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기채한 지방채에 대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이 허락하는 한 적절히 배려함

2) 중앙정부의 보조금

(가) 산업재배치 촉진환경정비 보조금(통산성)

○ 제조업, 두뇌입지법에서 정하는 특정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이전촉진지역에서 유도지역으로 이전 또는 유도지역에 공장 또는 사업소를 신증설할 경우 다음의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부표 4> 전원지역에 대한 산업재배치 촉진 보조금제도

구 분	입지지역	보조단가(한도액)	특례 공업단지 보조단가 (한도액)
이 전	전원지역내의 공업단지	10,000엔/㎡(2억엔)	12,500엔/㎡(2억5천만엔)
신증설	전원지역내의 공업단지 등	7,500엔/㎡(1억5천만엔)	10,000엔/㎡(2억엔)
	지역진흥정비공단의 단지	10,000엔/㎡(2억엔)	12,500엔/㎡(2억5천만엔)

- 주 1) 전원지역이란 전원지역 중 공업재배치촉진법상 「유도지역」 내에 있는 지역임.
 2) 특례공업지역이란 원칙적으로 1978년말까지 이미 조성완료 또는 조성 중인 것임.

에 상당하는 금액(<부표 3> 참조)
 을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음.

- 녹지, 연못 등 공지확보에 기여하
는 환경보전시설의 설치(토지면
적의 20% 이상)
 - 지역주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다음의 시설
 - 환경보전시설(배수로, 폐기물처
리시설 등)
 - 복지시설(운동장, 체육관, 풀, 집
회장, 탁아소, 공원, 의료시설 등)
 - 방재보안시설(소방시설, 가로등,
제설차 등)
 - 종업원용 시설(통근용버스, 주차
장, 식당 등)의 설치(신규종업원
30명 이상의 고용증가시에 한함)
 - 시험연구시설, 수전시설 등
- (나) 전원지역 산업재배치 촉진보조금
 (통산성)

○ 유도지역 내의 전원지역에 산업재
배치촉진 환경정비보조금과 마찬가지로 공장 또는 사업소 등을 이
전 또는 신증설할 경우, 다음의 사
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부표 4>
참조)을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임.

- 공원시설, 환경보전시설, 복지시
설, 방재보안시설
- 종업원용 시설, 물류시설, 정보수
집 · 처리시설, 통신시설, 판매촉
진 · 전시시설, 연수시설

3) 기 타

(가) 용자(지역진흥정비공단)
 이전촉진지역 등에서 유도지역 등으
로 이전하려고 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전
에 필요한 자금을 용자해 줌.

① 공장적지 담보자금의 대부

○ 대부한도액 : 공장적지평가액의

80%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이전
소유자금의 50%

- 대부기간 : 원칙적으로 5년 이내

② 공장이전운전자금의 대부

○ 대부한도액 : 공장이전에 필요한
운전자금의 50%

- 대부기간 : 원칙적으로 3년 이내

③ 공장적지 담보자금의 특별이율제도

○ 공장적지가 공적인 용도로 제공될
경우, 대부계약일로부터 2년을 경
과하고, 또한 공장이전이 생산기
능의 주요한 부분과 더불어 완료
된 경우 이자율을 경감해 주는 제
도를 마련하고 있음.

※ 그외 일본개발은행 홋카이도 東
北開發公庫 등의 저리 융자제
도가 있음.

(나) 지역고용개발 조성금제도(노동성)

지역고용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
기회 증대 촉진지역 및 특정고용기회증
대 촉진지역에서 사업소를 설치하거나
또는 정비하여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구
직자 등을 공공직업 안정소의 소개로 고
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역고용장
려금, 지역고용특별장려금 및 지역고용
이전급부금에서 지역고용개발조성금을
지급하는 제도임.

<참 고> 유도지역(공업재배치촉 진법 시행령)

1. 법률 제 2조의 2항 1호 政令에서 정
한 道縣은 홋카이도, 아오모리현, 이
와테현, 미야기현, 아키타현, 야마카타
현, 후쿠시마현, 니이카다현, 도야마
현, 이시가와현, 후쿠이현, 야마나시
현, 나가노현, 돗토리현, 시마네현, 도
쿠시마현, 가가와현, 아이치현, 다카치
현, 후쿠오카현, 사가현, 나가사키현,
구마모토현, 오이타현, 미야자키현, 가
고시마현 및 오키나와현으로 함.
2. 법률 제 2조 2항 1호의 政令에서 정
한 요건에 해당하는 市町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市町村으로 함.
(1) 국세조사결과 市町村의 인구(오
키나와현 구역에 대해서는 오키나
와 통계법(1954)에 기초한 국세조
사 결과에 의한 시정촌 인구, 이하
같음)로 1970년 인구가 50만명 이
상일 것.
- (2) 국세조사결과 市町村의 인구로
1970년의 인구가 50만명 이하일
때는 다음의 하나에 해당할 것
① 국세조사결과 市町村의 인구
가 1970년 30만명 이상이고, 공업
집적도가 2 이상 또는 인구증가율

(1965년 인구대비, 이하 같음)이
0.15(15%) 이상일 것

② 국세조사결과 市町村의 인구가 1970년 20만명 이상, 30만명 미만이고, 공업집적도가 3 이상 또는 인구증가율이 0.15 이상일 것.

③ 국세조사결과 市町村의 인구가 1970년 10만명 이상, 20만명 미만이고, 공업집적도가 3 이상일 것

④ 전항의 공업집적도와 합은 국세조사인구를 토대로 1970년 당해지역 1인당 공업부가가치액을 전국의 1인당 공업부가가치액으로 나눈 수치와 동년 당해지역 거주가능지역 1km²당 공업출하액을 전국의 거주가능지역 1km²당 공업출하액으로 나눈 수치를 합산하여 이를 2로 나눈 값임.

⑤ 전항의 1인당 공업부가가치액과 거주가능지역 1km²당 공업출하액 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通商産業省令에서 정함.

⑥ 법률 제 2조 2항 2호의 政令에서 정한 市町村은 별표 2의 市町村으로 하고, 그 구역은 1972년 10월 1일 현재의 구역으로 함.